

# 2022학년도 재학생 법정필수교육 이수 안내

## 1. 교육과정

성폭력, 가정폭력, 장애인식개선교육(총 3과목)

### ※ 관련 법적 근거

○ 폭력예방교육(성폭력, 가정폭력)

1.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
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(성매매 예방교육)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(성폭력 예방교육 등)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(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)

2022년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호의 학교는 관련 법령이 따라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 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(1시간 이상)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
○ 장애인식개선교육

1. 장애인복지법 제25조

2.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

3.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

4. 2021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(교육부)

## 2. 교육시간

과목 당 1시간 기준

## 3. 이수기한

**2022. 12. 31.까지**

(단, 학비감면을 받는 모든 학생(성적우수장학, 봉사장학 포함)은 **학비감면신청일까지 교육을 미 이수할 경우 등록금고지서에 학비감면이 반영되지 않음(교내 장학금 지급 필수 조건)**

**2022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교육미이수시 학위수여식 시상 고려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**

## 4. 수강방법

아주대 포탈 로그인 - 우측 하단 주요서비스 '인권센터\_온라인교육' 클릭 → 과목별 수강하기 (첨부파일의 매뉴얼 참고)

## 5. 수강 유의사항

1) 공학대학원 재학생은 **연 1회 필수로 이수**

2) **이수증은 별도 제출 불필요**(관리자가 이수여부를 별도로 확인 가능)

3) 성적우수장학, 봉사장학 대상자 중 **교육미이수 확인시 장학수혜 고려 대상에서 자동 제외**

※문의: 장학 관련 문의 - 석사과정 담당자(031-219-2311, ajoueng@ajou.ac.kr)

교육이수 관련 문의 - [폭력예방교육]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(031-219-1739, 1745)

[장애인식개선교육]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실(031-219-1540, 1556)